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6

발의년월일 : 2006. 6. 5
발 의 자 : 최광렬의원외 6인

1. 제안사유

2006. 4. 28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의3(지방의회의 의무 등)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원 윤리강령 준수의무 규정 및 윤리강령 제정(제2조)

나.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준수와 직권남용금지 규정(제3조 내지 제5조)

다.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금품 등 취득금지(제6조)

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사항 준수 및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제9조)

마.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조)

바.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준수) ① 의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및 사하구 관련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및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회의시간에 맞추어 정시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회의중 정당한 사유없이 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 7.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하구의회 의원윤리강령(제2조제2항 관련)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이익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다수의원의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사하구민의 전체 이익을 추구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며 의원의 품위를 지키며 청렴하고 겸손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